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향합니다.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생활 교육 과 |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감금, 폭행, 모욕, 약취유인, 성폭력, 명예훼손 등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 신체폭력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

✓ 언어폭력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 금품갈취(공갈)

금전요구 등

✓ 강요

강제적
심부름 등

✓ 따돌림

집단으로 피하는
행위 등

✓ 성폭력

성희롱,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 사이버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갈취, 영상 유포 등

학교폭력 신고 접수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학교 내 신고와 학교 외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신고방법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학교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 메일 또는
학교명의 메일로
신고



학교 공동 휴대전화
(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

학교 외 신고방법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 **#0117**
📁 **안전Dream**
(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



화해중재 대화모임
(관계회복프로그램)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화해중재 대화모임(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요건

사안 목록	충족	미충족
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약속하고 동의한)된 경우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1 개회 및
사안보고

2 피해관련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3 가해관련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4 참고인
진술 청취

5 학교폭력 여부 및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6 조치의결

7 교육장 명의
결정 통보

8 학교장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함

피·가해자
진술기회 제공

단, 참석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화상,
서면 등의 진술 기회 제공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전담지원
기관 안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서면사과

완료 기간 명시

제2호

접촉금지

완료 기간 명시
(학교 안팎, 인터넷, 전화 포함)

제3호

교내봉사

완료 기간 명시

제4호

사회봉사

시간 단위 조치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간 단위 조치

제6호

출석정지

일 단위 조치

제7호

학급교체

1학급 소규모학교일 경우
해당 조치 불가

제8호

전학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일정한 거리 기준 있음

제9호

퇴학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미적용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행정심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무효확인 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031) 249-0676~0679 / 0688~0689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법원

- ▶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
교육장이 피고가 됨



경기도교육청은 '온마음터 누리집'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온마음터

<https://on-maum.or.kr>

- ▶ 'ON'마음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켜놓고' 살피는 마음
- ▶ '온'마음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 ▶ '溫'마음은 학교폭력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마음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사후 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